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83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1.

발 의 자:김민철・김철민・김홍걸

박영순・양기대・오영환

이규민 • 이용선 • 이용호

장철민 · 한병도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새마을금고 부이사장과 중앙회 부회장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또는 중앙회 회장의 궐위 시에 직무대행권한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다른 권한과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화 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별도의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는 등 선거비용만 증가 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부회장·부이사장제도를 폐지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한편,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명확히 하고, 이를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 감독에 준용하는 등 새마을금고 지도부 선거 및 운영에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.

주요 내용

- 가.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제도와 중앙회 부회장제도를 폐지함(안 제17 조 및 제64조).
- 나. 임원 선거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원이 될 수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·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(안 제22조).
- 다. 임원 후보자,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등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,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 직무상 행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- 라. 중앙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금을 조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7조제7항 신설).
- 마.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처분 사유 확대 및 제재조치 권한 정비(안 제21조, 제74조의2, 제79조)
 - 1)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하여 해임 요구 외에는 직접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장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·감독에 이를 준용함.
 - 2) 임원이 해임요구를 받은 경우 당연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함.
- 바.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의 명칭을 "새마을금고복지회"로 명확히 규정하고,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

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함 (안 제84조).

법률 제 호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이사장, 부이사장을 포함한"을 "이사장과"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1명, 부이사장 1명"을 "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단서 중 "부이사장, 이사"를 "이사"로 한다.

제19조제3항 본문 중 "부이사장이,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"를 "이사회가 정하는 이사"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2호 중 "개선(改選)을"을 "해임요구를"로, "해임된 날"을 "해임된 날(해임요구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을 말한다)"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1호 중 "회원이나"를 "회원(업무구역에 속한 자로서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)이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"누구든지"를 "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한하며, 후보자는"으로 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기부행위의 제한)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(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)부터 그

선거일까지 회원(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이익의 제공,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(이하 "기부행위"라 한다)를 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1. 직무상의 행위

- 가.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·단체·시설(나목에 따른 금고는 제외한다)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·물품을 그 기관·단체·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 및 화환·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)
- 나.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·물품을 그 기관·단체·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(포상 및 화환·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)
- 다. 물품 구매, 공사, 역무(役務)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
-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 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·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

2. 의례적 행위

가.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(이하 이 조에서 "친족"이라 한

- 다)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나.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·부의금품(화환·화분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
- 다.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(弔客)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
- 라.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·단체·시설(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 제외한다)의 유급(有給) 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 연말·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
- 마. 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 등 각종 사교·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·규약 또는 운영관 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
- 바.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·성당·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(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)하는 행위
- 3.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·자선적 행위 에 준하는 행위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행위
-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

- ·부의금품, 음식물,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·지시·권유·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.
-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 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 다.
-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 부의금품을 제공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 의 명의로 한 경우(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 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)
- 2.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25조제6항 중 "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"를 "이사"로 한다. 제60조제2항 중 "부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"를 "신용공제대표이사"

제64조제1항 중 "부회장 2명, 신용공제대표이사 1명"을 "신용공제대표

로 한다.

이사 1명"으로, "11명 이상 21명 이하"를 "10명 이상 20명 이하"로 한다.

제64조의2제6항 전단 중 "제22조"를 "제22조, 제22조의2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제25조제6항 중 "이사장과 부이사장"은 "회장, 부회장과 상근이사""를 "제22조의2제6항 중 "이사장"은 "회장"으로, 제25조제6항 중 "이사장"은 "회장"으로, 제25조제6항 중 "이사장"은 "회장과 상근이사""로 한다.

제6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·운용할수 있다.

제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"를 "다음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"를 "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"로 한다.

1.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

가. 해임 요구

나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
다. 견책

라. 경고

2.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

- 가. 징계면직
- 나. 정직
- 다. 감봉
- 라. 견책
- 마. 경고
- 바. 주의

제79조제7항 전단 중 "금고에 대한 조치"를 "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"로 한다.

제79조의5제1항제1호 중 "개선"을 "해임요구"로 한다.

제83조 본문 중 "개선·직무정지"를 "해임요구·직무정지"로 한다.

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4조(복지기구 설치 등) ①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(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)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·운영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(이하 "복지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-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 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(計上) 하고,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.
- ④ 복지회의 설치·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5조제3항 중 "제22조제2항 및 제3항"을 "제22조제2항·제3항 및 제22조의2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 및 부회장은 임기만료시까지 제17조제2항, 제18조제1항·제7항, 제19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60조제2항, 제64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3조(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4조(임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74조의2제1항(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5조(새마을금고복지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설립된 재 단법인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적립한 준비금은 제84조제3항의 개정규 정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으로 본다.

제6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·제3항 및 제22조의2(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일어난 행위에 관한 벌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이사회) ① (생 략)	제17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
	흥)
② 이사회는 <u>이사장, 부이사장</u>	②이사장과
<u>을 포함한</u> 이사로 구성하며,	
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임원의 선임 등) ① 금고	제18조(임원의 선임 등) ①
의 임원으로 이사장 <u>1명, 부이</u>	<u>1</u> 명
<u>사장 1명</u> 을 포함한 7명 이상	
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	
의 감사를 두며, 임원은 금고	
의 다른 직(職)을 겸할 수 없	
다.	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	⑦
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	
선출하되, 다수득표자 순으로	
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	
으로 한다. 다만, <u>부이사장, 이</u>	<u>이</u> 자
<u>사</u>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	
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	
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	
따라 선출할 수 있다.	
⑧・⑨ (생 략)	8·9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임원과 직원) ①·② (생략)

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부이사장이, 이 사장과 부이사장이 사고가 있 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이 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 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 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 다.

④ ~ ⑨ (생 략)

제21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될 수 없다. 다만,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~ 11. (생략)
- 12.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(이 하 "금융관계법령"이라 한 다)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

제19소(임원과 식원) (1) • (2) (현
행과 같음)
③
<u>이사회가 정하는</u>
이 사
_.
· ④ ~ ⑨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임원의 결격 사유) ①
•
1 11 /처케키 가 ()
1. ~ 11. (현행과 같음)
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

해임[임원에 대한 <u>개선(개</u> 선(改選))을 포함한다. 이 하 이 항에서 같다]된 사 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<u>해임된 날</u>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

13. ~ 18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22조(임원의 선거운동 제한) 지 ① (생 략)

-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 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 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1. <u>회원이나</u> 그 가족(회원의 배우자, 회원 또는 그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 매,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 다. 이하 같다)에게 금품ㆍ 향응, 그 밖의 재산상의 이 익이나 공사(公私)의 직(職)을 제공,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

<u>해임요구</u>
르 글
<u>. </u>
해임된 날(해임요구의 경우
에는 해임요구일을 말한다)
13. ~ 1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임원의 선거운동 제한)
① (현행과 같음)
②
 .
1. 회원(업무구역에 속한 자로
서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
<u> 포함한다)이나</u>

행위

- 2. ~ 5. (생략)
-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 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1. ~ 3. (생략) ④ (생 략) <신 설>
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 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 | 람은 후보자에 한하며, 후보자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의2(기부행위의 제한) ①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(후보 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그 배 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 ·단체·시설은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(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)부 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(금고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나 그 가족 또는 회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・운영하고 있는 기관 • 단체 • 시설에 대하여 금전 ·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상 이익의 제공, 이익 제공의

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 속하는 행위(이하 "기부행위" 라 한다)를 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1. 직무상의 행위

가.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・단체・시설(나목에 따른금고는 제외한다)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・물품을 그 기관・단체・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 및 화환・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한다)

나. 법령과 정관에 따른 금
고의 사업 계획 및 예산
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・
물품을 그 기관・단체・
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
행위(포상 및 화환・화분
제공 행위를 포함한다)

<u>다. 물품 구매, 공사, 역무</u> (役務)의 제공 등에 대한

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·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

2. 의례적 행위

가.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(이하 이 조에서 "친족"이라 한다)의 관혼 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·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나. 후보자가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·부의금품(화환·화분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

다.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참석한 하객이나 조객(弔客)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

<u>을 제공하는 행위</u>

라.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·단체·시설(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금고는제외한다)의 유급(有給)사무직원 또는 친족에게연말·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행위

마. 친목회·향우회·종친회
·동창회 등 각종 사교·
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
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
의 정관·규약 또는 운영
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
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
를 내는 행위

바.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·성당·사찰 등에 통상적으로 헌금(물 품의 제공을 포함한다)하 는 행위

3.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・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

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정 안전부렁으로 정하는 행위

-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·부의금품, 음식물, 답제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·지시·권유·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.
-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.
- ⑥ 이사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임) ① ~ ⑤ (생 략)
 -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구상권(求償權)은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,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행사한다.
 - ⑦·⑧ (생 략)
- 제60조(이사회) ① (생 략)
 - 신용공제대표이사, 지도이사, 대표이사-----

- 1. 해당 금고의 경비로 관혼상 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 에 축의 • 부의금품을 제공 하면서 해당 금고의 경비임 을 명기하여 해당 금고의 명의로 한 경우(해당 금고 이사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)
- 2.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- 제25조(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 제25조(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 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 - -----o] \\-----

 - - (7) · (8) (현행과 같음)
 - 제60조(이사회) ① (현행과 같 음)
 - ② 이사회는 회장, <u>부회장 및</u> ② -----<u>신용공제</u>

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 성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64조(임원의 정수 등) ① 중앙 회에는 회장 1명, <u>부회장 2명</u>, <u>신용공제대표이사 1명</u>, 지도이 사 1명, 전무이사 1명을 포함 하여 <u>11명 이상 21명 이하</u>의 이사와 감사위원 5명을 임원 으로 둔다.

②·③ (생 략)

제64조의2(임원의 선출과 임기 조 등) ① ~ ⑤ (생 략)

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 제8항 본문, 같은 조 제9항, 제19조제8항, 제20조제2항,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·제12호의2·제13호·제13호의2·제14호·제15호,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21조의2, 제22조, 제23조, 제23조의2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제1항및 제27조를 준용한다. 이경우 제25조제6항 중 "이사장과 부이사장"은 "회장, 부회장과 상근이사"로, "감사"는 "감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64조(임원의 정수 등) ①
<u>신용공제</u>
<u>대표이사 1명</u>
<u>10명 이상 20명 이하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64조의2(임원의 선출과 임기
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 </u>
<u>제22조, 제22조의2</u>
· <u>제22조의2제6항 중 "이사</u>
장"은 "회장"으로, 제25조제6
항 중 "이사장"은 "회장과 상

사위원장"으로 각각 본다.

⑦ ~ ⑩ (생 략) 제67조(사업) ① ~ ⑥ (생 략)

<신 설>

제74조의2(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)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1.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, 직무정지, 견책 또는 경고

2.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,

근이사"
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67조(사업) ① ~ ⑥ (생 략) 제67조(사업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①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・운용할 수 있다.

1.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. 해임 요구 나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. 견책 라. 경고

다.

정직, 감봉, 견책, 경고 또는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주의요구

② 제1항(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정지된다.

③ ~ ⑤ (생 략)

제79조(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 도·감독) ① ~ ⑥ (생 략)

⑦ 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
 ·검사 결과, 금고에 대한 조
 최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
 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
 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
 무부장관"은 "회장"으로, "금

10 11 11 1101 21
요구
가. 징계면직
<u>나. 정직</u>
<u>다. 감봉</u>
<u>라. 견책</u>
<u>마. 경고</u>
<u>바. 주의</u>
②
<u>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</u>
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
 .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79조(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
도·감독) ① ~ ⑥ (현행과
같음)
7
직원에 대한 조치

고 또는 중앙회"는 "금고"로 본다.

⑧ (생략)

- 제79조의5(퇴임한 임원 등에 대 기한 명령내용의 통보)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중앙회 또는 해당금고에 통보하여야한다.
 - 제74조의2제1항(제79조제7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임원의 <u>개선</u> 또는 직무정지
 - 2. (생략)
 - ② (생략)
- 제83조(청문 등) 주무부장관이나 저희장은 제74조의2제1항제1호, 제74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, 제79조제7항에서 준

 ⑧ (현행과 같음)
제79조의5(퇴임한 임원 등에 대
한 명령내용의 통보) ①
1
해임요구
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83조(청문 등)

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제1호. 제74조의3제1항제3호, 제79조 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 지, 관계 임원의 개선·직무정 지를 명하거나 제74조의3제2 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 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 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. 다만, 그 처분의 상대방 또 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 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・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기구 설치・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<u>해임요구·</u>
<u> 직무정지</u>

제84조(복지기구 설치 등) ① 중 제84조(복지기구 설치 등) ① 중 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 원(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) 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· 운영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이루기 위 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(이하 "복지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 영한다.

제85조(벌칙) ① • ② (생 략)

- ③ 제22조제2항 및 제3항(제64 ③ 제22조제2항ㆍ제3항 및 제 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~ ⑥ (생 략)

- ② 복지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 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 금을 계상(計上)하고, 이를 별 도로 적립하여 회계 처리하여 야 한다.
- ④ 복지회의 설치・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5조(벌칙) ① ② (현행과 같 음)
 - 22조의2-----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